

의안번호	제 호
의 결 연 월 일	2023. . . (제 회)

의결사항	
------	--

고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고 성 군 수
제출연월일	2023. 10. 6.

고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	호
----------	---	---

제출연월일: 2023. 10. 6.

제 출 자: 고성군수

1. 개정이유

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사무 정비를 통한 제출 서류 간소화로 군민 편의를 제고하고, 「경관법」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등 정비(안 제10조, 안 제30조)

- 1) ‘공청회’ 관련 법령 인용 조항 변경
- 2) 「경상남도 경관 조례」, 「고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」 조문 변경 사항 반영

나. 인감증명서 등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 사무 정비(안 제18조, 별지 제5호서식)

- ‘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’ 붙임서류 중 ‘경관협정운영회 대표 인감증명서’ 삭제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경관법」 제11조,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

- 성별영향평가: 검토의견 없음[복지지원과-34342(2023. 9. 4.)]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: 고성군공고 제2023-1378호
 - 가) 예고기간: 2023. 8. 28. ~ 2023. 9. 18.(21일간)
 - 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- 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4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- 5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4. 본 문: 붙임과 같음

고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성군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영 제5조제2항”을 “법 제11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18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.

제3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「경상남도 경관 조례」”를 “「경상남도 경관 조례」 제13조”로, “도시디자인위원회”를 “경관위원회”로 한다.

1. 「고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」

제14조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

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공청회) ① <u>군수는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제10조(공청회) ① ----- <u>법 제11조제2항</u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8조(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) ① (생략)</p> <p>②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경관협정운영회 대표 인감증명서</u></p> <p>3. (생략)</p>	<p>제18조(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제>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0조(심의·자문 의제) 다음의 각 호에 대해서는 심의·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.</p> <p>1. 「<u>고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</u>」에 따른 <u>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</u></p>	<p>제30조(심의·자문 의제) 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「<u>고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</u>」 제14조에 따른 <u>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</u></p>

<p>2. (생략)</p> <p>3. 「경상남도 경관 조례」에 따른 경상남도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·자문사항</p> <p>4. ~ 6. (생략)</p>	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「경상남도 경관 조례」 제13조----- 경관위원회-----</p> <p>4. ~ 6. (현행과 같음)</p>
---	--

고성군 경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제2호
⇒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「고성군 경관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 및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비용이 수반되지 않고,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미첨부함.

작성자: 도시교통과장 정 강 호

참고**관계법령(발췌)**

□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

제10조(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)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·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

□ 경관법

제11조(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) ① 시·도지사등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,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